

自由貿易協定과 紛爭解決을 위한 法的課題 - 美國의 自由貿易協定과 반덤핑法을 中心으로 -

朴贊昊*

차 례

I. 서 론

II. 한미 FTA에 대한 미국의 입장

1. 추진 경과
2. 미 의회의 협상전략

III. 자유무역협정에 기초한 미국의 분쟁해결

1. 도입
2. 분쟁해결기구에 관한 문제
3. 반덤핑 분쟁해결을 위한 NAFTA와 DSB 비교
4. NAFTA에서의 반덤핑 분쟁해결절차

IV. WTO의 DSB 처리 절차

1. DSB의 분쟁해결
2. 반덤핑 문제에 대한 분쟁해결
3. WTO의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수정 논의

V. 결 론

【참고문헌】

* 韓國法制研究員 副研究委員, 法學博士

I. 서론

세계는 지금 글로벌화라는 이름으로 각종의 제도와 질서를 통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 부분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피부로 직접 다가오는 것은 경제 문제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동안 노동집약적 산업의 발전으로 경제 기반을 이루었고, 이제 기술집약적 산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각되어 선진국형 경제 체제로 전환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 동안 관세철폐노력과 병행하여 무역제한조치로 시장의 세계화를 기본 목적으로 하는 무역보호정책을 추구해왔다. 하지만, 자본간의 이동과 무역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해 국경을 기준으로 하는 견제는 이제 그 효력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로 최근 자유무역협정은 다자간 협정에서부터 양자간 협정까지 동시 다발적으로 전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공격적인 자세로 FTA 협상에 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경제에 있어서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이다. 또한 무역 의존국이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어서 이들 국가와의 FTA는 우리나라 전체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자유무역 또는 관세장벽제거와 같은 용어들은 그 동안 우리법학에서는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었고, 단지 경제와 무역 정책을 보조해주는 입법 작업정도로만 여겨져 왔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계기로 법학의 전분야에서 관련 부분 연구에 착수했고, 체결 이후 법체계의 변화는 법학 전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제 우리 경제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상품거래를 국제화시키는 과정에 도달하게 되었다. 또한 경제와 무역 정책에서 추진되는 자유무역협정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향후 이행과정에서 나타날

문제점에 대해서 법학 분야도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미 FTA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중, 협정내용을 보면 많은 수의 위원회가 설치되게 되는데, 이러한 FTA 체결이후 구성되는 양국간의 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라는 문제에서부터, 개성공단 생산 상품의 해석문제에 까지 여러 법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미 FTA에서 나타난 미국의 분석을 소개하면서, 향후 우리가 직면할 분쟁해결 문제에 대한 미국의 기존 전략과 법규정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II. 한미 FTA에 대한 미국의 입장

1. 추진 경과

우리나라와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은 2006년 2월에 양국이 착수를 발표한 후, 2007년 양국 정부가 협상에 합의했음을 발표하고, 현재 국회 비준만을 남겨놓은 상태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한미 FTA에 대한 경과와 추이는 온 국민의 많은 관심사항이었기 때문에 본고에서 소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동안의 분석에 있어서 미국 내의 입장에 대해서는 정확한 소개가 없었고, 우리나라 정치적 동향까지 자세하게 분석한 미국 의회보고서는 향후 비준과정과 FTA이행 과정에서 나타날 분쟁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미국이 한미 FTA협상에 참여할 당시 협상의 구체적 대상산업 범위에 많은 고심을 한 흔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미 의회와 행정부는 그 동안 미국이 체결했던 미국의 자유무역협상보다 그 범위를 확대하여 전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협상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¹⁾ 특히, 수십년 동안 한미 무역관계에서 분쟁을 일으켜왔던 자동차·농

1) CRS Report for Congress(hereinafter CRS), The Proposed South Korea-U.S. Free Trade Agreement(Korus FTA), at 1 (April. 23 2007).

업·무역구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상 목표를 수립하였다.²⁾

2. 미 의회의 협상전략

(1) 배경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는 FTA 협상에 임하면서, 높은 수준의 정치적 위험부담을 안고 참여하였다. 미국의 협상은 “무역신속처리국(기관)(Fast-Track Trade Authority)”이라고 불리우는 “무역진흥청(The Trade Promotion Authority)”의 감독하에 이루어졌고, 미 대통령은 2002년 초당적 무역진흥법³⁾에 의해 미 의회의 입장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한을 위임받았다.⁴⁾ 이러한 미국의 협상전 절차규정은 모두 신속하게 무역 관련 협정을 추진하여, 자국의 경제와 산업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결론짓자는 목적이라고 생각된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상에 참여하면서 기존의 강한 정치적, 군사적 동맹관계가 협상 전략을 수립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경제 관계이전의 정치적, 외교적 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외교정책과 안보정책은 경제 문제보다 더 우선시되어서 양국간에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시작하면서 양국의 관계는 즉각적인 경제적·외교적 정책을 최우선시하는 관계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2) Id.

3) The Bipartisan Trade Promotion Act of 2002(P.L. 107-210).

4) For more on the U.S.-South Korea Alliance, see CRS Report RL33567, Korea-U.S. Relations: Issues for Congress, by Larry A. Niksch; CRS, supra note 1, at 2 (The negotiations were conducted under the trade promotion authority(TPA), also called fast-track trade authority, that the Congress granted the President under the Bipartisan Trade Promotion Act of 2002(the Act)(P.L. 107-210). The authority allows the President to enter into trade agreements that receive expedited congressional consideration(no amendments and limited debate).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면서, 그 전략과 결과를 우리나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넓게는 동아시아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목표를 수립한다는 자세로 협상에 들어갔다.

(2) 우리나라와 미국의 무역 관계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제적 관계는 양국 모두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무역량은 10억 달러를 넘었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7번째 무역 상대국이며, 우리나라는 미국에 있어서 가장 큰 농수산물 시장이었고, 미국은 우리나라 시장을 대상으로 농산물을 비롯하여 반도체(CPU), 기계부분, 항공기 등을 주 대상으로 하여 무역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년간 한미 상품 무역 변동 추이>5)

연 도	미국 수출품	미국 수입품	무역수지	총 무역액
1990	14.4	18.5	-4.1	32.9
1995	25.4	24.2	1.2	49.6
2000	26.3	39.8	-13.5	66.1
2003	22.5	36.9	-14.4	59.5
2004	25.0	45.1	-20.1	70.1
2005	26.2	43.2	-17.0	69.4
2006	30.8	44.7	-13.9	75.5
주요 미국 수출 품목	반도체 칩과 제조 설비 항공기, 옥수수, 밀, 플라스틱			
주요 미국 수입 품목	반도체 회로, 텔레비전 평판 스크린, 자동차, 철			

5) 1990 and 1996 data from Global Trade Information Services. 2000-2006 data from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미 의회가 주목하고 있던 부분은 상호간의 경제 의존성인데,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미국 무역에 의존하는 비율이 훨씬 크다는 것이었다. 2006년 미국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세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고, 두 번째로 큰 수출시장이다. 2003년 이전까지 미국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큰 무역상대국이었지만 중국과 일본에 그 자리를 넘겨주었다.

(3) 무역 불균형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제 관계는 전술했듯이, 군사적·외교적 동맹관계에서 경제관계로 발전한 형태를 취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관계로 인해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졌고, 급격한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 기초 산업의 많은 부분을 미국 상품에 의존하게 되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노동 집약적 산업을 통해 가격 경쟁력 우위의 상품을 주로 미국에 수출하여 한미 경제관계를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전환되면서, 한미 경제 상호관련성에서 많은 무역 불균형을 초래했다. 또한 과거보다 무역량이 증가하면서 미국의 수출업자와 관련 정부기관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무역규제제도의 투명성(transparency)이 모든 주요 생산분야에서 아주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는 의견을 전개하고 있다.⁶⁾ 특히 문제를 삼고 있는 분야가 자동차와 통신 같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인데, 이 분야에서 회사설립에서부터 많은 차별적 요인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농업시장의 개방 부문에 있어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로 우리나라를 지목하면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닫혀진 나라로 우리나라를 간주하면서 개방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⁷⁾

6) CRS Report for Congress, The Proposed South Korea-U.S. Free Trade Agreement(Korus FTA), at 4-9 (April. 23 2007).

7) OECD, Economic Survey-Korea 2004.

<한미 무역 상관관계⁸⁾>

	총 무역	수출시장	수입원	외국인 직접투자원
미국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순위	#7	#7	#7	#28 (2004)
우리나라에 있어서 미국의 순위	#3	#2	#3	#2

우리나라는 이러한 무역 불균형과 미국의 압력에 대해 점진적인 개방과 법제 개선방안을 토대로 서서히 무역 문호를 개방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까지는 분쟁의 빈도가 낮아졌다. 또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하여 IMF로부터 580억 달러의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시장개혁을 단행한 것이 우리나라 경제의 전환점이 되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의 정도를 확대하여, 우리나라에 직간접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많은 자금이 유입되었다. 결과적으로 한때 외국자본이 우리나라 모든 은행 발행주식의 1/3을 소유하기까지 이르렀고, 우리나라 주식 거래의 40%를 외국인이 차지하는 수준까지 자본시장개방이 확대되었다.⁹⁾

(4) 미국의 협상 목표

1) 미국의 외교적 전략과 FTA

미국은 우리나라와 FTA협상에 임할 때, 전체적인 추진 목적과 세부 산업별 목표를 연계하여 추진하였다. 미국에서 우리나라와 FTA를 추

8) Asymmetrical Economic Interdependence(2006), U.S. Department of Commerce, U.S. Census Bureau and Bureau of Economic Analysis; Bank of Korea.

9) CRS Report for Congress, supra note 6, at 10.

진할 때 목표로 삼은 것은 비록 우리나라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전술했듯이 우리나라는 미국의 7번째 교역 상대국이고, 동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 교역 상대국이다. FTA는 성격상 단순한 비관세 또는 무역자유지역의 설치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경제적·외교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우리나라와 FTA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중국과 일본에 대한 견제 목적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였다.¹⁰⁾ 다시말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의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영향을 줄 목적이 일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¹¹⁾

또한 미국은 APEC에서 경제 통합내지는 자유무역지역 설치에 대한 논의가 미비하자, 아시아 개별 국가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도미노 효과”를 기대하면서 한미 FTA를 추진했다. 미국 기업연구소의 무역전문가 Claude Barfield 박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이후 다른 아시아 국가도 이와 유사한 FTA를 체결하라는 압력을 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¹²⁾

이러한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 의도는 세계 시장에서 중요한 소비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시아 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데서 시작됐고, 미국은 아시아 시장에서 차별적 지위에 처하는 것을 매우 우려하였다. 실질적으로 미국이 추구하는 자유무역협상과 그 기본이 되는 정책적 목표는 무역에 있어서 “경쟁적 자유(Competitive Liberalization)”를 확보하여, 상대국이 무역과 투자 장벽을 제거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를 기대하면서 출발했다. 한-미 FTA는 NAFTA 체결이후 뚜렷한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던 미국 무역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10) Id., at 9-19.

11) Id., at 11.

12) Barfield Claude, U.S.-South Korea FTA: A Tipping Point, The Policy Monitor. Medley Global Advisor, April 13, 2007.

2) 한미 FTA에 대한 미국의 시각

한미 FTA 협상 개시를 알리는 논의가 진행되었을 때, 미국내에서는 폭넓은 지지를 얻었다. 다수의 미국 국회의원들은 FTA가 무역과 투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세가 철폐되고, 그 동안 유지되어 왔던 우리나라의 무관세 장벽이 제거될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그러나 협상이 진행되면서 한미 FTA가 자국의 국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¹³⁾ 그 이유는 몇몇 산업부분에서 강력하게 주장되었는데, 특히 자동차 산업 부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미국 자동차 판매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무관세 문제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반대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강력하게 요구하여 실질적 효력이 당장 발생하지는 않지만, 추후 개성 공단에서 생산한 상품이 우리나라 생산품으로 간주되어, 미국으로 수출될 경우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적 우위를 통해 자국의 산업에 많은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¹⁴⁾

3) 미국의 산업별 협상 목표

한미 FTA 협상에 참여하면서, 미국은 기존에 체결했던 자유무역협정과 달리 매우 폭넓은 분야에서 자유무역협상을 관철하려는 의지를 나타냈다. 즉, 미국은 무관세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려는 의지로 한미 FTA 협상에 참여했다. 특히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의 쌀생산업자들이 한미 FTA를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우리나라가 그 동안 주장

13) William Primosch, Testimony of Senior Director, International Business Policy, 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on the Proposed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for the Trade Policy Staff Committee,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14) Thea M. Lee, Testimony on the Proposed U.S.- 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 Submitted by the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 March 14, 2006.

해왔던 단계적 쿼터 확대를 통해서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는 시간을 단축시키려는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FTA협상을 시작하는 많은 나라들은 농업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 이유는 다른 산업과 달리 농업 생산물은 쉽게 손상되고, 계절적·기후적 요인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이다. 즉, “신의 행동(Acts of God)”에 의해서 생산량과 가격이 좌우되는 농업에 자유무역을 적용한다면, 자국의 산업에 많은 피해를 가져올 우려 때문이었다.¹⁵⁾ 그러나 미국의 주요 수출품인 농산물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자유무역협상 대상 중의 하나였지만,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산업 중의 하나였다.¹⁶⁾ 미국은 우리나라의 복잡한 검역조치와 우리나라 정부의 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금 제도 철폐등 경쟁적 우위를 갖고 있는 미국산 농산물이 무관세와 함께 더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를 개혁할 것을 협상 목표로 삼았었다.

자동차 부분은 농업과는 달리, 미국내에서도 한미 FTA를 지지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으로 나뉘었는데, 그 이유는 미국외의 다른 자동차 생산국가들이 우리나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반해, 미국산 자동차의 영업실적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미 FTA가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 유리하다기 보다는 오히려 미국 자동차 산업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렇듯 한미 FTA에 대한 각 산업별 찬반 논쟁은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미국의 목표는 경쟁적 우위에 있는 상품에 유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시장에 무관세 장벽을 모두 제거시키겠다는 것이었다.

15) Id.

16) Id.

Ⅲ. 자유무역협정에 기초한 미국의 분쟁해결

1. 도입

미국은 20세기 후반 캐나다·멕시코와 자유무역협상을 추진한 이후,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를 체결하면서 무역 자유화를 강하게 추진하게 되었다. 이후 칠레,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상 타결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상에서 양자간 자유무역협상으로 이행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물론 미국을 중심으로한 자유무역협상이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유무역협상의 대부분은 아니다. 유럽 연합의 탄생과 EC를 중심으로 하는 많은 자유무역협상이 있었고, 세계 각국이 자국의 권역에서 추진하는 자유무역협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미국의 자유무역협상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미국 경제가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의 측면에서 기인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 달러는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거래되고 있고, 미국의 수출·수입량은 한나라의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NAFTA협상이 타결된 이후, 10년 넘는 시간 동안 세계 경제에는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바람이 강하게 불었다.¹⁷⁾ 그러나 자유무역지대 설치를 위한 각국의 끊임없는 노력의 이면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려는 양면적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자국의 이익보호는 수많은 무역 분쟁을 초래했고, 양자간 또는 다자간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다자간 무역질서를 위한 국제 규범과 양자간 규범 사이에는 경제적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었고, 분쟁해결 역시 제도적 문제로 인해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17) Alice Vacheck-Arnada, Sugar Wars: Dispute Settlement Under NAFTA and the WTO as Seen Through the Lens of the HSFCS Case and Its Effects on U.S.-Mexican Relations, 12 Tex. Hisp. J.L. & Pol'y 121, at 122-24 (2006).

이러한 자유무역협상의 양면성을 경제학자들은 코끼리가 새 육조에 빠져드는 것이라고 비유하고 있다.¹⁸⁾ 또한 자유무역정책과 상반되는 보호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긴장관계 또는 비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식은 반덤핑 문제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또한 농업의 문제에 있어서는 극단적인 보호주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하지만 미국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의 이와 같은 양면성에도 불구하고 미국 무역대표부(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s, USTR)를 중심으로 다자간 무역협상 뿐만 아니라 권역 또는 지역별 무역협상의 장점을 지적하면서 계속적으로 자유무역협상을 추진하고 있고,¹⁹⁾ 또한 무역 분쟁에 있어서도 자국 산업의 극단적인 보호수단을 강구하기 위하여 협정 내용 뿐만 아니라 그 적용에 있어서도 자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다.

2. 분쟁해결기구에 관한 문제

위에서 비록 농산물에 대한 예를 들었지만, 미국이 추진했던 분쟁해결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조직 내지는 기구에 관한 문제이다. NAFTA 협정 내용을 보면 NAFTA 회원국은 무역분쟁에 있어서 WTO 내의 분쟁해결기구(the Dispute Settlement Body at WTO, 이하 “DSB”라 한다)와 NAFTA 규정에 의한 NAFTA 분쟁해결심의회(NAFTA Panels)기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배타적 특권이 부여되어 있다.²⁰⁾

18) Id.

19) Terence P. Stewart, Patrick J. McDonough & Marta M. Prado, Opportunities in the WTO for Increased Trade Liberalization of Goods: Making Sure the Rules Work for all and that Special Needs are Addressed, 24 Fordham Int'l I.J. 652(2000).

20) Alice Vacheck-Arnada, Sugar Wars: Dispute Settlement Under NAFTA and the WTO as Seen Through the Lens of the HSFCs Case and Its Effects on U.S.-Mexican Relations, 12 Tex. Hisp. J.L. & Pol'y 121, at 123 (2006): Members can choose between a Chapter 20 NAFTA panel and the WTO. A Chapter 20 panel works much like a panel at DSB because the complaining parties are represent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

여기에서 많은 법학자와 실무가들은 의문을 제기했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분쟁해결기구 선택은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즉 두가지 분쟁해결절차 또는 기구를 모두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특정 해결기구가 일방에게 유리한 경우는 공정하지 못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²¹⁾ 이러한 문제는 같은 목적이 WTO의 DSB에서 달성될 수 있다면, 왜 NAFTA에서 이러한 분쟁해결시스템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문제에 도달하게 된다. 이 질문에 대해서 몇몇 학자들은 경기 후퇴 또는 회복기 그리고 경기 최고점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지역주의 단면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²²⁾

동일한 무역분쟁 문제에 대해서 해당 당사자가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를 다르게 선택할 수 있고, 또한 그 결과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면, 이러한 NAFTA Panel과 WTO의 DSB의 분쟁해결 선택 또는 분쟁의 문제는 실제 미국과 멕시코의 설탕세 분쟁에서 큰 논란이 되었다.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과당 옥수수 시럽(the High Fructose Corn Syrup)에 대해서 멕시코 정부가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면서 불거진 양국간의 무역 분쟁은 양 분쟁해결절차를 오가면서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 중복 문제가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생각한다.²³⁾

agencies. On the other hand, a Chapter 19 panel deals specifically with antidumping under NAFTA and is unique in that it allows representation by private parties.

21) Frederick M. Abbott, The North American Integration Regime and its Implication for the World Trading System, in the EU, The WTO and The NAFTA: Towards a Common Law of International Trade[*collected courses of the Academy of European Law*], at 170(2000).

22) See generally William A. Lovett, Reflectins on the WTO Doha Ministerial: Bargaining Challenges and Conflicting Interests: Implementing the Doha Round, 17. *Am. U. Int'l L. Rev.* 951(2002)

23) *Id*; Mexico-Anti-Dumping Investigation of High Fructose Corn Syrup(HFCS) from the United States, Case No. WT/DS132/R(Report of the Panel, Jan. 28, 2000)(본 사건은 과당 옥수수 시럽 사건으로 불리우며, 미국이 이미 합의한 NAFTA 규정(멕시코 Sugar mills에 대해 연간 50만톤을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미국

3. 반덤핑 분쟁해결을 위한 NAFTA와 DSB 비교

(1) 반덤핑 조항 적용의 문제

우리나라의 경우도 종종 미국 시장에서 반덤핑으로 제소됐다는 뉴스가 일년에도 수차례 보도되고 있다. 일단 우리의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덤핑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반도체, 전자제품, 자동차, 그리고 철강제품등과 같은 공산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다자간 또는 국제 규범적 무역협상에 근거를 두고 있는 분쟁해결절차와 양자간 또는 지역적 협상에 근거하고 있는 분쟁해결절차가 충돌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위에 언급한 미국과 멕시코의 설탕 분쟁이다.

덤핑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물건을 제조해서 파는 회사 또는 상인이 자국 시장에서보다 외국 시장에 훨씬 낮은 가격으로 동일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²⁴⁾ 덤핑으로 판정되는 기준은 생산지 시장 또는 회사 본점소재지 시장에서의 가격에서 수입 가격을 뺀 나머지 가격이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경우에 덤핑으로 보고 있다.²⁵⁾ 덤핑행위

정부가 사탕수수 농장주들의 압력에 의해 미 의회가 116,000톤으로 제한하는 이면 합의를 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멕시코 정부는 미국에서 수입되는 과당 옥수수시럽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해 관세를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멕시코 정부의 조치는 멕시코 설탕 산업을 위협하기 때문에 GATT상의세이프 가드를 준용한 NAFTA규정을 발동한 것은 합법하다는 해석이 있었지만, 이러한 조치는 WTO의 DSB상에서는 자유무역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거부되었다. 이 사건은 기존의 국제분쟁해결에 관한 모든 규정을 자국의 이익에 맞게 적용하여 사건을 계속 연장시키는 문제를 발생시켰고, 다자간 무역협정과 양자간 무역협정이 충돌하는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24)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Antidumping” or “AD Agreement”), Art. 2. 1, Raj Bhaja, International Trade Law Handbook, at 392(2nd ed. 2001)

25) Raj Bhala, International Trade Law: Theory and Practice, at 829-20(2000).

가 발견되고, 조사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기관이 덤핑 상품이 자국의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반덤핑 의무가 부과된다.²⁶⁾ 덤핑에 대한 예비결정(preliminary determination)과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기관은 재량에 따라 반덤핑 의무가 부여되는데, 그 의무는 보통 매우 강력한 것으로서 덤핑 상품을 해당 시장에서 모두 수거해서 수출국으로 다시 역수입해야 하는 정도의 강력한 조치를 보통 수반하고 있다. 만약에 덤핑 판정을 받은 회사가 부과된 의무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DSB 또는 NAFTA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최초에 반덤핑법이 시행된 당시의 입법목적은 급속한 경제 자유무역시대 설치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무역 불균형의 문제로부터 수입 국가를 보호하고자 하는 안전 장치로서 도입된 것이었다.²⁷⁾ 다시 말해서, 국내 생산을 추진하는 것보다 수입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판단되어 각종의 관세율까지 인하하여 초래된 극심한 경쟁에서 쉽게 무너질 것 같은 경쟁력 없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법이 고안된 것은 아니었다.²⁸⁾ 즉, 반덤핑 법은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있지만, 미국의 법적용은 항상 “약탈적 덤핑행위로 부터의 보호(the Protection from Predatory Dumping)”와 “시장의 고유목적에 충실한 경쟁의 증진(the Promotion of Market Competition)” 사이에서 법적용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²⁹⁾

26) Sugar Wars.

27) Alice Vacheck-Arnada, Sugar Wars: Dispute Settlement Under NAFTA and the WTO as Seen Through the Lens of the HSFCS Case and Its Effects on U.S.-Mexican Relations, 12 Tex. Hisp. J.L. & Pol'y 121, at 127 (2006).

28) See generally Michael C. Hathaway & Gary Horlick & Terence Stewart et al., Antidumping, Countervailing Duties and Trade Remedies: Let's make a Deal?: Presentation and Summary. 37 Int'l L. 821(2003).

29) Raj Bhala, International Trade Law: Theory and Practice, at 831(2000).

(2)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에서의 반덤핑조항의 적법성

1) 반덤핑 조항의 부적합성

약탈적 덤핑은 어떤 이유에서도 타당성을 부여받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미국의 현재와 같은 강력한 반덤핑 조항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다.³⁰⁾ 현재 유럽연합, 캐나다, 남미 국가들은 약탈적 덤핑 행위를 좀더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이러한 기초에서 유럽의 Common Market과 남아메리카 자체의 지역적 협정들은 반덤핑 조항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여 반덤핑 조항 그대로 유지한다면, NAFTA 내의 캐나다와 멕시코는 반덤핑 조항 삭제 또는 포기에 대한 별도의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³¹⁾

캐나다와 멕시코가 반덤핑 조항에 대해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실제 NAFTA 협상 체결 당시 양국의 모두 미국이 주장하는 반덤핑 조항을 반대했었고, 오랜 시간의 협상 끝에 한시적으로 규정하기로 합의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완전한 지역적 경제 통합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한 조항이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흐름이 맞추어 반덤핑 조항 폐지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다.³²⁾

이러한 비판으로 인해, 반덤핑법은 법제적으로 재검토가 곳곳에서 이루어져 있고, 법률과 시장(경제)실무의 교차점에서 반덤핑법의 경제적 효용성이 문제시되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의 반덤핑법은 자국의

30) Charles M. Gastle & James Leach, The Need for an Antidumping Market Structure Test in the Context of Free Trade Agreements, 11 Ind. Int'l & Comp. L. Rev. 37(2000).

31) See generally Id.

32) See also Richard O. Cunningham, The Management and Resolution of Cross Border Disputes as Canada/U.S. Enter the 21st Century, 26 Can.-U.S. L.J 79(2000).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게 수출하는 “약탈적 가격”과 “공급 과잉”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구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³³⁾ 공급과잉으로 인해서 해당 상품의 시장 가격이 약탈적 수준까지 떨어진 경우, 반덤핑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공급과 가격의 시장가격 형성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전체적으로 미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들이 가격 담합 등을 처벌하는 등 국제 무역에 있어서도 경쟁법(competition law)적 측면에서 해결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³⁴⁾

2) 반덤핑 조항의 필요성

전술한 시장 경제측면에서의 부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국의 많은 학자와 실무자들은 반덤핑법과 자유무역협정에서의 반덤핑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옹호주의자들의 가장 강력한 근거는 무역관계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바로 반덤핑법이기 때문에 NAFTA를 중심으로한 완전한 경제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반덤핑 조항을 폐지하는 것은 자칫 수출품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회사 또는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일면 수공이 되는 부분도 있다. 왜냐하면, 덤핑 물건이 외국 시장에 공급된다는 것은 실제로는 그 영향이 상품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수입하는 시장에 잘못된 시장 신호를 함께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기업을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품의 개발부터 생산 판매에 이르기까지 치밀한 이익 조정과 계산하에 산출된 자사 상품에 대해 동종의 덤핑 상품이 유입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한 입장에 처할 것이다.³⁵⁾ 즉, 회사법이나 경쟁법도 마찬

33) Terence P. Stewart, U.S. - Japan Economic Disputes: The Role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Laws, 16 Ariz. J. Int'l & Comp. L. 689(1999).

34) Arun Venkataraman, Binational Panels and Multilateral Negotiations: A Two-Track Approach to Limiting Contingent Protection, 37 Colum. J. Transnat'l L. 533, at 561-62(1999).

35) 예를 들어, 외국의 경쟁 회사 상품이 자국으로 거의 덤핑 가격에 가깝게 수입되

가지겠지만, 경제관계법규와 무역협정은 시장 본연의 신호와 기능에 충실하게 반응하여 전개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옹호론자들의 주장도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다만, 사안에 따라 같은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이와 더불어 분쟁해결 결과에 있어서도 선택된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난다면 이러한 부분은 한번 재고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4. NAFTA에서의 반덤핑 분쟁해결절차

(1) 의 의

1994년 1월에 체결된 NAFTA는 대륙법 체계를 갖고 있는 개발도상국(멕시코)과 Common Law 체계를 갖고 있는 두 선진국과 협정을 통해 일부분이라도 법체제의 통일성을 구축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법체제의 상이함은 NAFTA 규정 19장의 분쟁해결부분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NAFTA 19장 분쟁해결은 20장의 중재와 비교해보면 매우 독특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인에게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는 점이다.³⁶⁾ 즉, 반덤핑문제에 있어서는 손해를 입은 기업이 자신의 정부에 반덤핑 행위가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조사결과 가격 덤핑이 발견된 경우, 동종의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 기관은 해당

어 경쟁관계에 직면한 경우, 해당 상품을 생산하던 회사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계속 영업을 추진해야 할지, 아니면 시장에서 해당 상품을 철수시키면서 이탈할 지를 결정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생산과 공급 그리고 수요라고 하는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시장 진입과 퇴출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출을 통해 경쟁회사에 손실을 가할 목적으로 무역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자유무역협정의 기본적인 취지와도 많은 부분 어긋난다고 보여진다.

36) NAFTA 제20장 중재는 회원국이 중재를 신청하도록 규정하면서, 당사자 지위를 국가에 한정하고 있다.

수입에 일정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NAFTA의 반덤핑에 관한 조치는 WTO의 규정과는 달리, 외국 수출업자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변론할 수 있는 당사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³⁷⁾

분쟁해결은 위한 가장 중요한 소송 절차상의 차이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관할 법원의 차이에 있다. DSB의 해결방법에 따르면 반덤핑 문제가 발생한 경우, 회원국은 조약의 규정에 따라 분쟁 해결에 관한 소를 관할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NAFTA 19장에 따르면 수입국의 법원칙을 적용한 국내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가장 논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관할 법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법규와 이론들인데 수입국의 자국의 법원칙을 국제법적 또는 해당 산업에 관련된 국제무역규범에 대한 검토없이 바로 자국의 표준기준 내지는 규범을 해당 반덤핑 분쟁해결에 적용한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볼 수 있다.

(2) 분쟁해결절차

미국에서 NAFTA 규정과 미국 국내법에 따른 반덤핑 의무부과 관련절차가 시작되는 시점은 미국 상공부(The Department of Commerce, DOC)의 해당 산업 부문에 속해있는 다수의 회사에 의해 소가 제기된 시점부터 시작된다. 같은 NAFTA 체결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와는 달리, 미국에서 반덤핑 의무에 대한 결정과정은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먼저 미국 상공회의소가 덤핑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가격 차이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국제무역위원회(the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가 덤핑 상품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한다.³⁸⁾

37) See Imports of High Fructose Corn Syrup, Case No. Mex-USA-98-1904-01 (NAFTA, Chapter 19), P3 (Apr. 15, 2002).

38) Myles S. Getlan, The Globalization of International Trade Litigation: AD/CVD Litigation - Which Forum and Which Law, 26 Brook. J. Int'l. L. 893 (2001)(이러한 미국의 반덤핑 조사에 관해 NAFTA 범위내에서 문제가 된 사건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

반면에 반덤핑 상품으로 판정되어 미국에서 의무를 부과한 캐나다 또는 멕시코 생산회사들은 NAFTA 19장 규정의 위원회에 미국의 조치가 정당한 것인지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NAFTA 또는 WTO 판단 요청 전에, 수입업자는 국제무역법원(재판소, the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즉, 미국 상공부의 판단이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에는, 국제무역법원은 사건을 처음부터 면밀하게 조사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정부기관의 결정이 확실한 증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인가, 또는 적법절차를 준수했는가라는 Chevron 기준을 적용하는데, 이 기준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고, 정부 기관의 반덤핑 의무부과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한, 무역법원은 미국 상공부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³⁹⁾ 또한 정부의 판단이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검토할 때, 법원은 법제적 판단을 할 것이 요구된다. Chevron 원칙에 따르면, 법규가 애매모호하지만 허락되는 범위에서 정부가 판단한 경우라면, 설사 법원이 다른 결론에 직면하더라도 미 상공부의 판단은 그대로 유지된다.

IV. WTO의 DSB 처리 절차

1. DSB의 분쟁해결

WTO 내에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at WTO)를 설치한 것은 1994년 GATT의 가장 중요한 결실 중의 하나였다.⁴⁰⁾ 그러나

입된 축구공 무역이 문제가 되었는데, 본 사건에서 미국의 축구공 제조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한 조사가 위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39) David A. Gantz, Disputes Settlement Under the NAFTA and the WTO: Choice of Forum-Opportunities and Risks for NAFTA Parties, 14 Am. U. Int'l L. Rev. 1025(1999).

40) Alice Vacheck-Arnada, Sugar Wars: Dispute Settlement Under NAFTA and the WTO as Seen Through the Lens of the HSFCS Case and Its Effects on U.S.-Mexican

WTO는 회원국들을 강제적으로 합의사항에 구속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효력에 있어서 회원국 또는 분쟁당사국에 효력이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다. 즉, WTO의 DSB 분쟁절차는 전적으로 가입국의 자발적인 준수에 달려있다.⁴¹⁾

이러한 WTO 분쟁해결의 강제적 효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DSB는 “분쟁합의각서(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DSU)를 요구하고 있고, DSU를 작성한 당사국은 반드시 결정 내용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 시간에 대한 제약이 수반된다. DSU에 일반적으로 규정되는 절차적인 부분 중 가장 먼저 진행되는 것은 분쟁 당사국들이 교섭에 의해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후 교섭이 실패한 경우, 분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당사국은 위원회 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NAFTA에서와 같이 국제통상법 전문가로 구성된다. 그러나 NAFTA의 분쟁해결과는 달리 분쟁당사국 출신의 중재 위원은 위촉될 수 없다.

2. 반덤핑 문제에 대한 분쟁해결

반덤핑 문제에 대한 WTO의 분쟁해결은 위에서 살펴본 미국이 주도하는 NAFTA의 해결방법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NAFTA 역시 그 모체를 GATT의 규정에서 찾을 수 있듯이, WTO의 Panel도 1994년 GATT 협정 제6장의 반덤핑 합의(Antidumping Agreement)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원칙을 따르고 있다. 이 표준원칙은 전술한 Chevron 원칙의 근거가 되었다. 다시말해서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기관의 조사가 적절하였고, 그 결정에 있어서 공정하였다면 정부기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Relations, 12 Tex. Hisp. J.L. & Pol'y 121, at 134-36 (2006).

41) See Joost Pauwelyn, In the Limits of Litigation: “Americanization” and Negotiation in the Settlement of WTO Disputes, 19 Ohio St. J. on Disp. Resol. 121, at 122(2003).

1990년대 초반 우루과이 라운드가 진행되면서, 국제 경쟁에서부터 자국의 취약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⁴²⁾ WTO의 반덤핑 합의 조항은 미국법에 그대로 수용되었고, 또한 NAFTA 규정에도 그대로 규정되었다.⁴³⁾

3. WTO의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수정 논의

WTO는 국제무역의 중심에 위치한 국제기구이지만, 전술한 것처럼 실제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서는 강제적 효력을 발휘하기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었다. 그 이유로는 미국 정부의 자국산업 보호를 위하여 반덤핑 문제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려는 강력한 정책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GATT 협정과 WTO의 노력으로 인해 국제무역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에 발맞추어 WTO의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WTO의 Director이면서 장관인 Panitchpakdi는 DSB의 분쟁해결절차는 많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DSU 작성시, 위원회는 어떠한 다른 단체 또는 정부의 개입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GATT 협정 기본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⁴⁴⁾

WTO의 분쟁해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중 가장 강력하게 제기된 것은 실효성 있는 WTO의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DSB에게 회원국들이 결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강제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42) William A. Lovett, Reflections on the WTO Doha Ministerial: Bargaining Challenges and Conflicting Interests: Implementing and Doha Round, 17 Am. U. Int'l.L.Rev. 951, at 970-74(2002).

43) 19.U.S.C. §1516a(b)(1)(B)(i): The Court can find the investigating agency's determination unlawful if it is unsupported by substantial evidence, or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law.

44) See generally Susachai Panitchpakdi, The Future of the WTO (Chapter VI: The WTO Settlement System), Aug.29, 2005.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과, 또한 회원국의 법체계가 DSB의 분쟁해결을 수용할 수 없는 규정을 갖고 있다면, 법규 수정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⁴⁵⁾ 이 문제는 주권 침해 문제라는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되었지만, 회원국과 전문가 모두는 DSB의 권한은 너무 추상적이고 광범위해서 그 실효성을 발휘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했다.⁴⁶⁾ 이러한 변화는 분쟁 처리에 있어서 규정 중심(rule based)의 해결방향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 역시 강제적 효력에 대한 변화 없이는 남소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WTO의 분쟁해결절차인 DSB는 판단을 위한 원칙 적용의 문제에서부터 권한의 확대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반덤핑에 대한 분쟁해결에서 NAFTA와 같은 지역협정과 WTO의 DSB가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 또는 시장에 있어서는 강자에 의한 힘의 논리가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법제적 보완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제 무역에 있어서 국제규범이 지역경제협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 그 문제는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재검토되어야 한다.

V. 결 론

미국은 멕시코,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⁴⁷⁾을 체결한 이후, 유사한 협상 전략과 모델을 이

45) Alice Vacheck-Arnada, Sugar Wars: Dispute Settlement Under NAFTA and the WTO as Seen Through the Lens of the HSFCS Case and Its Effects on U.S.-Mexican Relations, 12 Tex. Hisp. J.L. & Pol'y 121, n.64 (2006).

46) Id.

47)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Dec. 17, 1992, U.S.-Can.-Mex., 107 Stat. 2057, 32 I.L.M. 289.

후에 추진된 칠레와 싱가포르 FTA 협상에 사용하였다.⁴⁸⁾ 미국이 체결한 일련의 자유무역협정은 공통적으로 강력한 투자자 보호규정을 규정하고 있다.⁴⁹⁾ 흥미로운 점은 칠레 FTA와 싱가포르 FTA는 시기적으로 거의 동시에 추진되었지만, 추진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칠레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시도했던 초기에는 미국과의 협상만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NAFTA의 일원으로 가입되는 것을 추진하였지만, 미국내 반대로 인해 결렬되고 현재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번 한미 FTA에 대해 전술했듯이, 미국은 이번 자유무역협상에서 단지 우리나라만을 목표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 모두를 그 대상으로 추진한 것이었다. 즉, 단순한 경제적 목표뿐만이 아니라, NAFTA와 같은 하나의 모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했고, 또한 중국과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FTA 논의는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FTA 협상과 체결 그리고 국회 비준도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많은 경제적, 법률적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준비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본론에서 언급한 반덤핑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이중적 입장은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분쟁해결과정을 결론지으려는 것은 양국 모두가 같은 입장일 것이다.

FTA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모든 무역 질서를 비롯해서 경제 이론, 그리고 법률적인 부분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48) David A. Gantz, The Evolution of FTA Investment Provisions: From NAFTA to the United States - Chile Free Trade Agreement, 19 Am. U. Int'l L. Rev. 679, at 680(2004).

49) NAFTA, ch 11.

할 수 있다. 특히, 분쟁해결문제는 FTA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될 수 있는 법률 분야이고, 추후 미국의 분쟁해결 사례를 분석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 올 무역분쟁에 많은 이론적 배경을 제공할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제어 자유무역협정, 분쟁해결절차, 반덤핑, 무역 불균형, 한미 자유무역협정, 국제무역기구, 협상전략

【참고문헌】

CRS Report for Congress(hereinafter CRS), The Proposed South Korea-U.S. Free Trade Agreement(Korus FTA), at 1 (April. 23 2007).

OECD, Economic Survey-Korea 2004.

Barfield Claude, U.S.-South Korea FTA: A Tipping Point, The Policy Monitor. Medley Global Advisor, April 13, 2007.

William Primosch, Testimony of Senior Director, International Business Policy, 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on the Proposed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for the Trade Policy Staff Committee,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Alice Vacheck-Arnada, Sugar Wars: Dispute Settlement Under NAFTA and the WTO as Seen Through the Lens of the HSFCs Case and Its Effects on U.S.-Mexican Relations, 12 Tex. Hisp. J.L. & Pol'y 121, at 122-24 (2006).

Terence P. Stewart, Patrick J. McDonough & Marta M. Prado, Opportunities in the WTO for Increased Trade Liberalization of Goods: Making Sure the Rules Work for all and that Special Needs are Addressed, 24 Fordham Int'l I.J. 652(2000).

Frederick M. Abbott, The North American Integration Regime and its Implication for the World Trading System, in the EU, The WTO and The NAFTA: Towards a Common Law of International Trade[collected courses of the Academy of European Law], at 170(2000).

Raj Bhala, *International Trade Law: Theory and Practice*, at 829-20 (2000).

Michael C. Hathaway & Gary Horlick & Terence Stewart et al., *Antidumping, Countervailing Duties and Trade Remedies: Let's make a Deal?:Presentation and Summary*. 37 *Int'l L.* 821(2003).

Charles M. Gastle & James Leach, *The Need for an Antidumping Market Structure Test in the Context of Free Trade Agreements*, 11 *Ind. Int'l & Comp. L. Rev.* 37(2000).

Richard O. Cunningham, *The Management and Resolution of Cross Border Disputes as Canada/U.S. Enter the 21st Century*, 26 *Can.-U.S. L.J* 79(2000)

Terence P. Stewart, *U.S. - Japan Economic Disputes: The Role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Laws*, 16 *Ariz. J. Int'l & Comp. L.* 689(1999).

Myles S. Getlan, *The Globalization of International Trade Litigation: AD/CVD Litigation - Which Forum and Which Law*, 26 *Brook. J. Int'l. L.* 893 (2001).

The Legal Issues of Free Trade Agreement and Dispute Resolution

– Focused on the U.S. Antidumping Duties and Free Trade Agreement –

50) Park, Chan - Ho *

It seems that many social sciences are likely to sail toward Globalization, and Free Trade Agreement is hot issue in the economy, policy, and law. Recently, Korea and Unites States came to an agreement of KORUS FTA. This convention will affect and change a lot of policies and laws which should be revised because of FTA.

In the view of Korea and U.S. trade history, these states' trade frictions have diminished over the last decade and a half as political leaders have been forced to give higher priority to foreign policy and national security concerns, and South Korea and U.S. have increasingly used the multilateral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nd other formation to address bilateral trade problems. In addition, South Korea has introduced a number of reforms to open its economy to foreign competition and investment that have addressed some of the U.S. complaints. Yet, even though tensions have diminished, a number of long-standing, deep-seated differences in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 have remained below the surface.

After the yeard of intense trade liberalization we are in a time of tension, pulled toward free trade on one side and protection on the other. Now, we are faced with liberalization of free trade and international economy.

* Associate Research Fellow in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Ph.D. in Law

In this article, I review U.S. Free Trade Agreement for future tactics of dispute resolution and the conflicts of process between WTO and NAFTA. The goal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legal scholars and lawyers with the reference legal research of FTA.

KEY WORDS Free Trade Agreement, Dispute Resolution, Antidumping Duty, KORUS FTA, WTO, Negotiation Tactics, DSB, NAFTA.